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nnj
----------	-----

발의연월일 : 2019. 11. 29.

발의의원 : 신동윤 의원

1. 제안이유

옥연지, 달창지 등 관내 주요 저수지의 상류지역에 위치한 축사의 이전을 적극 유도하여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축사 이전 재정지원을 포함하여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 및 일부조항 개정

(1) 조례 내용에 적합하게 조례명 변경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달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2)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명확화(안 제1조~제2조)

(3)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사 증·개축에 관한 내용 구체화(안 제3조)

(4)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고시 내용 포함(안 제3조 별표)

(5) 가축사육제한구역 무허가 축사 적법화 특례규정 신설(안 부칙 제2조)

나. 축사의 이전에 대한 재정적 지원 조항 신설(안 제5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제11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조에 따라 달성군 일정구역에 대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과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주거밀집지역”이란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관광숙박업소 제외)·공장 등이 5호 이상 밀집(건물외벽이나 부지경계 간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인 경우)된 지역과, 공동주택·관광숙박업소·「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 복지시설을 말한다.

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신축·개축·재축 등의 용어는 「건축법 시행령」의 용어정의에 따른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와 같으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법령에 따른 각급 학교 및 대학 또는 실험·연구기관에서 의약품 원료 개발 등을 위한 실험 연구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 부설계류장에 계류 중인 가축
 5. 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 미만의 배출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 ②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법 11조에 따라 이미 허가 또는 신고하고 설치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운영자는 기존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한 장소에 새로운 배출시설의 설치나 기존 배출시설의 증축·개축·재축을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돼지·개·닭·오리를 오염부하가 적은 소·염소 등으로 축종 변경하는 경우 개축할 수 있다.
 2. 가축분뇨배출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기존 시설을 개축하고자 하는 경우
 3. 기존 배출시설의 현대화나 개선을 통해 악취 및 폐수의 발생량이 감소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기존 시설의 100분의 20이내 범위에서 증축할 수 있다.
 4. 화재, 천재지변 및 가축전염병 예방 등으로 멸실된 기존 시설을 재축하는 경우

제4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보 및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하며, 주거밀집 지역의 주택 수 증감 등 변동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제5조(축사 이전에 대한 재정적 지원)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명령을 받은 농가에 관한 부지알선과 이전비용 보조 등의 재정적 보조에 대하여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및 특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달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달성군 고시 제2018-108호, 2018. 6. 4.)에 따라 설정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그 설정 전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배출시설은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8조의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 제9조 및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부칙조항의 삭제) 조례 제2518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 표】

달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고시 내역

○ 지정면적 : 338.56k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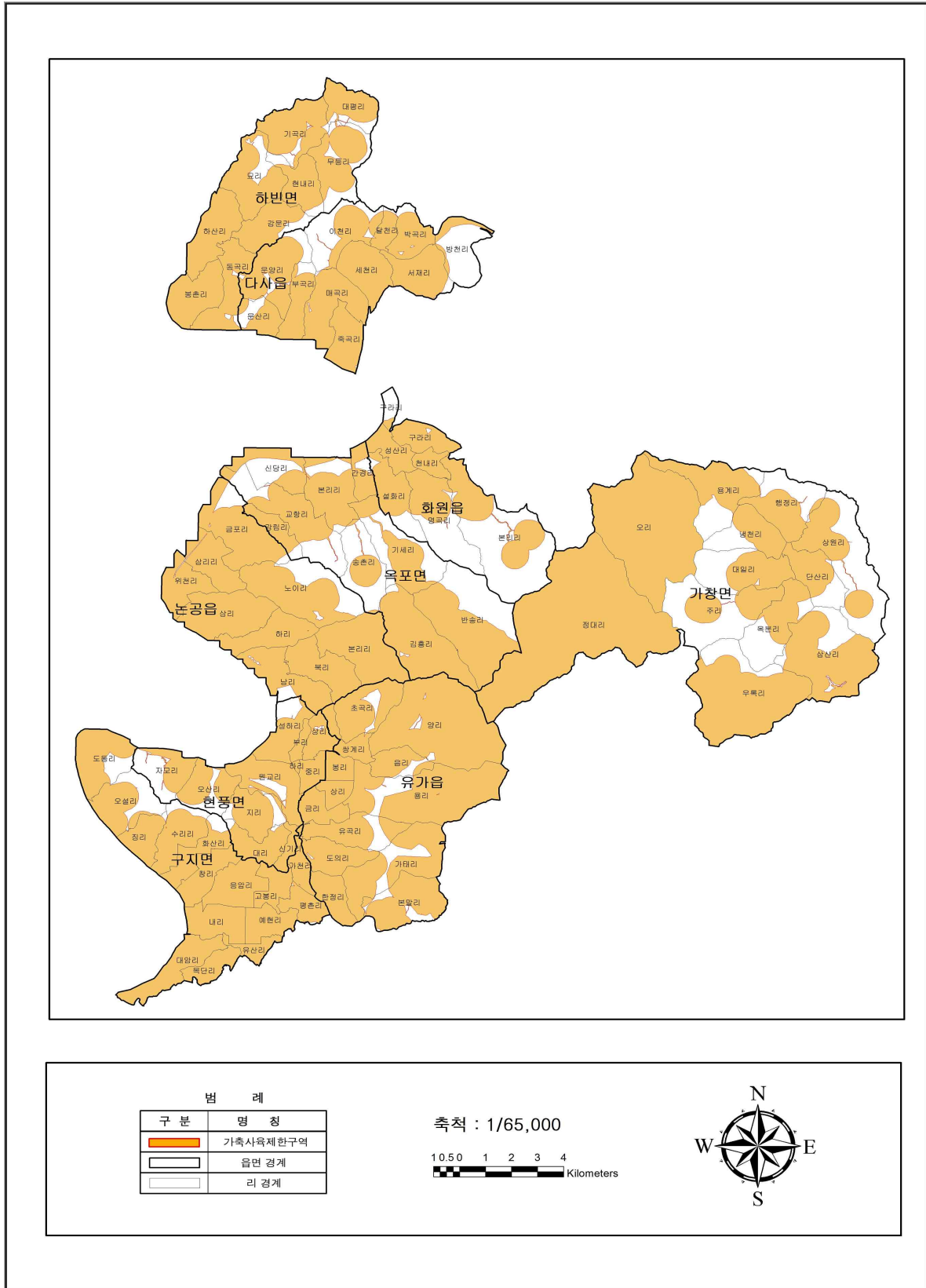
○ 지정범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 제36조의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지역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
 - 제36조의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자연·생산녹지)내 주거밀집지역 및 지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
 - 제36조의 녹지지역(보전녹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제37조의 취락지구 및 지구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
-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국가 및 지방하천)
- 「소하천정비법」 제3조에 따른 소하천구역

□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면적 내역

읍·면	전체면적(㎡)	제한구역(㎡)	비율(%)	비 고
계	426,676,170	338,565,904	79.3	
화원읍	27,677,095	15,425,514	55.7	
논공읍	43,879,627	39,637,210	90.3	
다사읍	36,673,549	28,458,919	77.6	
유가읍	57,255,353	51,877,741	90.6	
가창면	111,162,070	84,616,547	76.1	
하빈면	36,701,065	32,005,015	87.2	
옥포면	48,921,675	31,269,899	63.9	
현풍면	24,566,577	19,173,269	78.0	
구지면	39,839,159	36,101,791	90.6	

□ 가축사육 제한구역 총괄도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한 지역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危害)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그 지정·고시를 요청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 없이 설치되거나 변경된 배출시설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그 시설을 사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가축 또는 사료 등을 제공하여 사육을 위탁(이하 "위탁사육"이라 한다) 할 수 없다.